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10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부제출(제220210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규정 정비(안 제22조)	2

I. 정부제출(제2202104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3. 검토의견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규정 정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략)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단서 신설>	5. ----- -----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7. (생략)0	6.·7.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2조제2항제5호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제21조제1항1)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1) 「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2)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등록 취소를 유예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대·내외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려는 정부의 ‘소상공인 제재 처분 유예를 위한 법령정비3)’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입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4) 및 타 입법례5)를 고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2)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참고자료 참조

4)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고용된 기술인력의 퇴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체의 경영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464개사이고, 등록기준 및 소상공인 요건 등을 고려⁶⁾할 때,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7)>

① 자본금 : 1억원 이상

② 인력 : 다음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③ 장비 : 다음 장비를 모두 갖추 것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등 21개 장비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체는 전체의 28.8%인 133개사로 추정됨.

문 의 처
02)6788-5591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 |
|--|
| <p>❶ 업종별 평균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억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0억 이하)</p> <p>❷ 인력(상시 근로자수)</p> <p>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p> <p>나) 가) 외의 업종 : 5명미만</p> |
|--|

[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법령정비 개요]

□ 개정 내용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비 대상	정비 내용
법률 15개**	· 소상공인 등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처분 유예 규정을 법률에 두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제재처분 유예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규정하여,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외 영업자도 제재처분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법령별 세부 내용 붙임 1 참조

붙임 1

법령별 세부 내용

연번	법령안	대상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법에 관한 법률안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생산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림청
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		산림청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사업 법인		산림청
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채채취업, 석재가공업		산림청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신사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설물)설계업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 개정법에 관한 법률안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환경부8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		기상청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환경부
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환경부
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검사 대행자		환경부
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국토교통부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국토교통부
1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정화·정비업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해양수산부
1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항로표지 관리업무)위탁관리업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해양수산부